

『2022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(재난지원금 3차)』 시행 공고

서울시 및 25개 자치구가 함께 진행하는 『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(재난지원금 3차)』 지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. 1. 17.

서울특별시장

1 사업 개요

-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예술창작 활동 위축 및 위기를 맞은 문화예술인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(재난지원금 3차) 지원 사업을 추진

2 지원대상

- **공고일 현재(2022년 1월 17일)** 서울시 거주 중인 예술인으로서 아래 세가지 기준(①, ②, ③항)을 모두 만족하는 자
 - ① 공고일 현재('22.1.17) 기준 서울시 자치구(주민등록주소지상 해당 자치구)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되어 있는 자
 - ②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유효기간이 공고일 현재 유효한 자
 - ③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인 자

가구원수	소득기준 (중위 120%)	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		
		직장가입자	지역가입자	혼합
1인	2,333,774	82,112		-
2인	3,912,102	137,178	129,070	138,878
3인	5,033,641	177,454	184,453	180,075
4인	6,145,296	216,279	233,478	219,871
5인	7,229,418	254,658	281,796	260,234
6인	8,288,405	296,681	330,939	307,505

【지원유의사항】

- ①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예술인은 2022 서울시 특고·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대상에서 제외

【지원요건 확인사항】

- 예술활동증명 확인서
 - 예술활동증명 확인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(www.kawfartist.kr)에서 심의를 통해 발급하며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하여야 함.
 - ※ **공고일 이후 신청자, 공고일까지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은 자(공고일 현재 심의 중인자, 유효기간이 경과한자 등 포함) 제외**
- 가구원 산정
 - 세대별 주민등록표(주민등록등본)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존비속, 배우자 및 형제, 자매를 가구원으로 봄
 - ※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본인과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는 가구원에 포함
 - ※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

○ 소득기준

-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여부(보건복지부고시 제2021-211호 '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·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'에 따른 가구당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)
- 대상자가 직접 제출한 2021년 12월분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확인

3 지원 내용

○ 예술인 1인당 100만원 ※ 지원금액 및 지급시기는 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

4 신청 및 접수

○ (온라인 신청) 1월 24일(월) 09:00 ~ 2월 7일(월) 24:00

이메일 nowonfac@nowonarts.kr

- ※ 이메일 제목 형식 :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신청(성명, 핸드폰번호)
- ※ 접수서류 누락 우려가 있으니 이메일 제목 형식에 맞춰 제출 요망

○ (현장 신청) 1월 24일(월) 10:00 ~ 2월 7일(월) 18:00

- * 업무시간내 신청 가능(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)
-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노원문화예술회관 3층 방문 신청
- ※ 신청기간 중 토, 일, 휴일 및 점심시간(12:00 ~ 13:00) 현장 신청 불가
- ※ 신청기간을 확인하시고 해당 신청기간 이전이나 이후에 신청된 건은 인정하지 않음
- ※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신청 원칙이나, 원로 예술인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 현장 접수처로 방문
- ※ 대상자 본인이 신분증,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여 직접 신청

※ 등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자치구별로 2월말부터 지급될 예정
- 다만,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

5 제출서류

- ①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등 동의서(홈페이지 다운로드)
- ② 본인 신분증 사본 및 본인명의 통장 사본
※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
- ③ 예술활동증명 확인서(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후 제출)
- ④ 주민등록등본(과거주소변동 사항 등 전체 포함, 발급일자14일내)
- ⑤ 가족관계증명서(발급일자14일내)
- ⑥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
- ⑦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
- ⑧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'21년 12월)
※ 예술인본인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⑥, ⑦, ⑧ 서류포함
※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본인과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는 가구원에 포함

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	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본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■ 본인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■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<p>[추가서류]주민등록등본의 가구원중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가입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■ 가입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■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<p>[추가서류]배우자 및 자녀가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되지 않았을 경우 배우자 및 자녀의 아래 서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가입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■ 가입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■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본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■ 가입자(부양자)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■ 가입자(부양자)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<p>[추가서류]주민등록등본의 가구원중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가입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■ 가입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■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<p>[추가서류]배우자 및 자녀가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되지 않았을 경우 배우자 및 자녀의 아래 서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가입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■ 가입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■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

6 대상자 결정 및 지급방법

- 대상자 결정
 -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심의 후 대상자 결정
 - 발표 및 지급 : 2022. 2월말 이후
 - ※ 신청한 자치구에서 개별 통보
- 지급방법 : 본인명의 계좌 입금

7 유의사항 및 부정수급 관련

<1> 유의사항

- ① 본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예술인은 2022 서울시 특고·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대상에서 제외

<2> 부정수급
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*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,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「공공재정환수법」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
 - * (예) 의도적으로 일부 소득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 등
-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, 「형법」 제231조(사문서 등의 위조·변조)에 따라 고발조치(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)

8 기타 참고 사항

-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심사는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
-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에서 보류되거나,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
 - 일부 서류의 누락 등으로 인한 지급지연과 우선순위를 판단함에 있어 받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
- 지원금 지급 이후 중복지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을 수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지원금을 환수할 예정
-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접수를 권장드리며, 방문 접수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 등본 기준 노원구 홈페이지 및 노원구 문화체육과를 통해 확인 가능

붙임1 신청개요(안) -자격, 지원서류, 제외자 등

구 분	내 용
지원대상 (동시충족)	①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거주(공고일 기준) ②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예술활동증명서 유효자(1/17공고일 기준) ※ 공고일 이후 신청자 및 공고일까지 증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사람 제외 ③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인 자
유의사항	①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예술인은 2022 서울시 특고·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대상에서 제외
제출서류	①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등 동의서(홈페이지 다운로드) ② 본인 신분증 사본 및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③ 예술활동증명서(한국예술인복지재단발급) ④ 주민등록등본(과거주소변동 사항 등 전체 포함, 발급일자 14일 이내) ⑤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⑥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납부확인서('21년 12월) ※ pdf, jpg 파일 등 인정, 서류첨부시 PC화면을 찍은 파일 인정 안됨. 출력후 사진촬영본은 인정
신청방법	○ 대상자 본인이 지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자치구(노원구)에 직접 신청 (위임장 소지시 대리신청 가능) ○ 접수방법 ① 온라인접수 : 이메일 - '22.1.24(월) ~ 2.7(월), 24시까지 ② 현장방문접수 : 노원문화예술회관 3층 - '22.1.24(월) ~ 2.7(월), 18시까지 * 평일 오전 10시~ 오후 6시(점심시간 12~1시) 주말, 공휴일 제외

붙임2 제출 서류별 발급처

서류	발급처	비고
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외 및 약약 동의서	본 공고 제출 서류 첨부(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) 작성 제출	신청인의 등본 및 건강보험 자격에 등재된 모든 인원 서명
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	① 온라인발급 ☞ 정부 24(www.gov.kr)에서 공인인증서로 발급 ② 주민센터 발급 ☞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 ③ 무인민원발급기 ☞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신분증 및 지문조회로 발급	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, 세대원의 전입일/변동일 사유, 세대 구성 일자 및 사유, 교부 대상자 외 다른 세대원의 이름을 반드시 포함하여 발급
통장사본	· 해당금융기관 웹사이트, 앱(App)또는 가까운 금융기관	
예술활동증명 확인서	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(www.kawfartist.kr)에서 예술활동증명 확인서를 출력. 다만,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지원신청 대상에서 제외 -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> 경력지원 > 예술활동증명 > 신청 내역 확인	
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(공고일 이후 발급, 대상자 주민등록번호, 이름 전부표기, 건강보험료 고지/납부금액 있어야함) ※ 2021. 12월분	① 온라인 발급 ☞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(www.nhis.or.kr) 공인인증서로 발급 ② 콜센터: 1577-1000 ③ 지사방문: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하고 발급 조회조건은 반드시 전체로 선택 후 발급 .	해당 사업 공고이후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된 경우 심의 제외됨 ※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
<공통사항> - 허위 서류 제출시 심의제외하며, 향후 사업에 참여 제한될 수 있음 - 서류는 스캔 또는 촬영본(PC화면 촬영 불가, 인쇄물 촬영본 인정) 을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하되 전체 내용이 잘 나오도록 제출해야 하며 인식 불가할 경우 심사 제외		